

해외 법제 최신 동향

제 목 : 중국 헌법 개정(제5차)

1 개요

- 중국공산당 제19기 3중 전회(18. 2. 26. ~ 28.)에서 헌법 개정안 심사, 금년 3. 11.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

※ 본 헌법 개정은 1954년 최초 헌법 제정 및 문화대혁명 이후 1982년 새로운 헌법 제정(현재 헌법) 이후, 1988년 1차 개정, 1993년 2차 개정, 1999년 3차 개정, 2004년 4차 개정 에 이은 5차 헌법 개정이고, 이번 개헌 표결 결과는 재적 2964명 중 찬성 2958명, 반대 2명,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찬성률은 99.7%였음

2 헌법 개정 주요 내용

- 국가 주식 및 부주식의 2회 초과 연임 제한 조항 삭제
 - 헌법 제79조 제3항을 “중화인민공화국 주식, 부주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함”으로 개정, 국가주식 및 부주식의 2회 초과 연임 제한 규정 삭제
 - 중국공산당 총서기,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제한 규정이 없는 것처럼 헌법상 국가주식의 임기제한 규정도 삭제됨
- ‘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’ 헌법 삽입
 - 헌법 서문에 “마르크스 레닌주의, 모택동 사상,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 중요 사상, 과학발전관,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인도하에”로 수정하여 시진핑의 이름과 그의 정치이념을 중국공산당 당장에 이어 헌법에도 병기함
- 국가 감찰위원회 신설
 - 헌법 제3장 국가기구편에 제7절 감찰위원회 관련 5개 조항을 신설
 - 국가감찰위원회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법률에 따라 독립된 감찰권을 행사하며, 행정기관과 사회단체, 그리고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,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 규정인 제67조 제6항에서 ‘국무원, 중앙군사위원회,

- 국가감찰위원회, 최고인민법원, 최고인민검찰원의 감독“으로 기재하여 국가기관 서열상 국무원, 중앙군사위 다음 세 번째로 위치하여 최고인민법원보다 앞섬
-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산당원만 감찰 대상으로 하던 중앙기율위원회와 달리 모든 공무원과 공무수탁 사인까지 감찰 대상으로 하고, 조사 등 임의수사 뿐만 아니라, 인신구속, 재산의 압수 및 몰수 등 강제수사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짐
- 기타
 - 평화외교정책 및 대외 정책 관련 국정방침 조정 및 보완, 구(區)설치 관련 시(市)의 지방 입법권, 전인대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수정이 있었음 ☑